

[사 건 명] 행심 2018 - 75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내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 『학내외전문가에 의한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0시간』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내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는 ○○학교 학생이고, 피청구인은 ○○학교장으로, 피청구인은 2018. 11. 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 한다)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에 대한 학교폭력 건에 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이라 한다) 제17조에 의거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학생 및 보호자 20시간 이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8. 11. 19.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서,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서, 2018. 12. 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학폭위 학부모위원회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지 않고 무투표 당선되었기 때문에 학폭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한 위법한 구성이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청구인은 2018. 10. 19. □□□과 ○○○이 다투던 중에 □□□이 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께 알리기 위하여 휴대폰 녹음을 하였고, □□□이 지워달라고 하자 이후 삭제하였다. 그 과정에서 □□□은 오히려 녹음을 삭제하지 않는다고 청구인에게 야구배트를 휘두르면서 위협하였으며, 청구인 보호자와 □□□ 보호자는 서로 연락하여 오해를 풀었다.

다. 청구인이 2018. 11. 1. 칠판에 즐라맨 그림에 남자성기를 그린 후 화살표 표시를 한 후 □□□이라고 적었다는 주장도, 담임교사는 □□□이라는 이름만 적힌 것을 보았고 그림은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 학생만 낙서를 목격하였는데 이는 초등학생들이 흔히 하는 낙서이며 수치심을 느낄만한 것이 아니다.

라. 청구인과 □□□은 2018. 11. 1. 학교 정문 앞에서 돈을 갚으라고 서로 실랑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을 벽으로 밀친 후 목

을 즐겼다는 주장이 있으나 서로 언쟁하는 도중에 어깨를 치는 행동이었다.

마. 학폭위에서는 학생 상호간의 다툼에 대하여 청구인을 일방적인 가해자, □□□을 피해자로 결론 내리고 부당하게 처분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학폭법 제13조 제1항에 학부모위원 선출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2018. 3. 19. 학부모총회에서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이름, 이력 소개를 하였으며, 학부모위원 3명 모두 소견 발표를 하였고 이의제기 및 선출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거수절차를 진행한 후 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

나. □□□은 청구인에게 녹음기록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청구인이 거부하자 □□□은 울음을 터트렸고, 청구인은 □□□ 학생의 우는 장면까지 녹음을 하였으며, 청구인측과 피해학생측이 통화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학생측은 그간 청구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사안조사 과정 및 자치위원회에서 사과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 2018. 11. 1. 하교시간 때 ‘돈을 갚으라’ 는 이야기로 일어난 청구인과 □□□의 몸싸움에서 청구인이 □□□의 목을 졸랐다는 내용과 청구인이 칠판에 즐라맨 그림을 그리고 남자 성기 부위를 그린 후 화살표를 하고 □□□의 이름을 적은 내용은 목격한 학생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며, □□□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불안 증세로 정신과 진료 및 심리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라. 학폭위에서는 위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자료 및 상담 자료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안을 심의하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학폭위 회의록, 청구인 진술서, 피해학생 진술서, 목격학생들 진술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8. 10. 19. □□□과 ○○○의 다툼을 당사자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녹음하였고, 청구인이 녹음한 것을 지워주지 않자 □□□이 울음을 터뜨렸고 청구인은 □□□의 우는 모습까지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8. 11. 1. 칠판에 졸라맨 그림 위에 무엇(남자 성기 부위라 주장)을 그린 후 화살표 표시를 하고 □□□이라고 이름을 써서 □□□은 수치심과 함께 스트레스를 받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가. 학폭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2018. 10. 19. 휴대폰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을 한 행위와 2018. 11. 1. 칠판에 낙서를 한 후 □□□이라는 이름을 쓴 행위는 □□□에게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절성

학폭위는 청구인 및 피해학생, 목격자들의 진술 등 사실자료와 상담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학폭위에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학생

및 보호자 20시간 이상 이수」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 및 보호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심리 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 행동을 교정할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Wee센터에서 특별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1일 5시간으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항목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는 적절하나 이수시간에 대해서는 과중한 면이 있다.

다.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 학폭법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가해행위에 비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학생 및 보호자 특별 교육이수 10시간」으로 이 사건 처분 내용을 변경하기로 한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는 만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